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01286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도희

피고, 항소인 EL

피고, 피항소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1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6, 18, 20, 21, 22, 24 내지

29, 31, 33, 34, 35, 37, 38, 40 내지 61, 63 내지 71, 73, 76, 78

내지 91, 93, 97, 98, 99, 104, 105, 106, 108 내지 122, 125,

127, 129 내지 134, 137, 139, 140, 141, 143, 144, 145, 147,

149, 151, 152, 155 내지 160, 163, 165, 166, 167, 169 내지

173, 175 내지 178, 180, 181, 182, 185, 187, 190, 191, 192, 195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성록

변론 종결 2019. 10. 10.

판결 선고 2019. 11. 21.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4가합585209 판결

주 문

1. 피고 EL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L를 제외한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I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EL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EL가, 원고와 피고 EL를 제외한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I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용인시 수지구 JD 임야 56408㎡ 중 주식회사 B 명의의 지분 56408분의 464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B와 제1심판결 별지 근저당권 목록의 '피고(근저당권자)'란 기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같은 목록 해당 '등기원인'란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 H은 각 위 부동산 중 2/7에 관하여, 피고 망 L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I은 위 부동산 중 1/3에 관하여, 선정자 J, K은 각 위 부동산 중 1/3에 관하여(이상 망 L의 상속인들), 피고 망 E의 소송수계인 O은 위 부동산 중 3/7에 관하여]은 주식회사 B에 같은 목록 해당 '접수번호'란 기재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EL를 제외한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EL

제1심판결 중 피고 EL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EL가 제기한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EL의 주장

피고 EL는 제1심판결에 자신의 주소로 적힌 춘천시 소재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제1심 소송 진행 당시인 2017. 3. 17. 현재 주소지인 수원으로 이사하여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및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2018. 3. 28. 무렵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된 자신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장 부분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이 사건 소장 부분은 2015. 6. 4. 피고 EL가 집행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그 후 피고 EL는 2016. 11. 22. 변론기일통지서, 2016. 12. 2. 변경된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 2) 제1심법원은 2017. 4. 7. 피고 EL에게 다시 변경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17. 4.

14.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2017. 4. 20. 해당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2017. 4. 21. 그 통지서가 발송송달로 송달간주되었다. 그 후 피고 EL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고, 해당 서면들은 발송송달로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판결正本 역시 송달불능되어 2018. 1. 1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 EL에 대한 제1심판결은 2018년 2월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 EL는 2018. 4. 12. 제1심법원에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판단

피고 EL가 소장 부분을 당시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은 피고 EL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 EL는 그 이후 제1심의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 EL가 소장 부분 송달 이후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됨으로써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EL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법원이 피고 EL가 소장 부분을 수령한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해당 서면들이 송달되지 않자, 이를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된것으로 본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EL가 항소기간 경과 후 제기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EL를 제외한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1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들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피고 V, W, X, EL를 제외한 별지 피고 명단 기재 나머지 피고들1)에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U의 2013. 10. 3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 제4항 관련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 등기를 마칠 무렵, B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피고들의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B이 다른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B의 적극재산 전부를 합하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B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라고 한다)가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라고 한다)를 마칠 무렵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를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나.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항소심 법원이 인용한 제1심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제1심판결 제4항 판결 이유)와 제1심에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갑 제19에서 24호증, 을라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바 제1호증, 제1심증인 T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마친 2012. 9. 17. 무렵 B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그 적극재산 가액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B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소한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5141호로 B 전 직원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2013. 6. 27. 무렵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소는 2013. 6. 27. 무렵부터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마친 2012. 9. 17.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S은 B 등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2012. 6. 7. 구속되었는데,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 592명으로부터 합계 약 35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고, 해당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S이 구속된 후 2012. 8. 21. S과 B 등으로부터 10억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 받았고(당시 제1심증인 T가 S, B 등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 갑 제4호증), 2012. 8. 31. B 등에 해당 인증서를 주요 증거로 하여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22.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2가합74071 판결, 갑 제3호증), 소 제기 당시 청구원인에 '2012년 6월 무렵 S이 구속된 사실을 알았고, S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 외에도 400명이 넘고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한 2012. 9. 17.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B의 피해자들 중 일부인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해당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 합계가 약 113억 원 정도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S이 구속된 후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할 무렵에는 S이 B을 통해 한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업이 수익을 내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미 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고, B의 채무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가압류 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있었을 무렵, B의 주요재산은 아래와 같았고, 그 합계액은 약 12억 원에 불과하였는데(갑 제20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5141 판결의 재산내역 참조), 그 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약 696,870,000원으로 가장 다액에 해당하였다2).

① 용인시 수지구 JD 임야 56408㎡ 중 56408분의 46458 : 696,870,000원(이 사건 부동산, 다만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211,848,480원에 해당한다), ② 용인시 수지구 JE 임야 1436㎡ : 17,740,344원, ③ 용인시 수지구 JF 임야 394㎡ : 4,867,476원(2, ③ 부동산은 ① 부동산과 인접한 위치에 있었는데, 2, ③ 부동산에는 2012. 8. 30.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④ 전남 완도군 JG 임야 63683㎡ 중 63683분의 28744, ⑤ 전남 완도군 JH 임야 4278㎡ 중 4278분의 308: 두 부동산의 가액 합계 425,680,800원, ⑥ 전남 고흥군 JJ 임야 664㎡ : 501,320원(공시지가), ⑦ 전남 고흥군 JJ 임야 324㎡ : 211,248원(공시지가), ⑧ 전남 고흥군 JK 잡종지 2178㎡, ⑨ 전남 고흥군 JL 잡종지 222㎡, 10 전남 고흥군 JM 잡종지 1755㎡ : 세 부동산의 합계 59,670,000원, ① 전남 고흥군 JM 잡종지 지상 건물 3,024,000원
원고는 2012. 8. 31. B의 재산 중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2, ③ 부동산과 가액이 낮은 6, ⑦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과 4, 5, 8, ⑨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9. 17.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가압류 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3. 18. 10, 11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설정 등기를 마쳤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가압류 등기 무렵 B의 재산 규모, 원고가 이 사건가압류 등기 무렵 B의 재산 대부분을 가압류하였던 사정,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이전에 T 등 B의 직원들로부터 B의 재산 상황과 당시의 유사수신행위 피해 규모 등을 안내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원고는 B의 적극재산 총액이 약 12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등 대략적인 재산 현황과 해당 적극재산으로는 피해액을 변제하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2013. 6. 27. B의 전 직원 등을 상대로 B과 전 직원 등 사이에 체결된 앞서 본 4, 5, 8, 9, 10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5141 사건, 갑 제20호증), 그 소장에서 'S이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고, S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B의 주요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마쳤으며, B의 적극재산으로는 가압류 결정을 마친 부동산들을 제외하고는 별도 재산이 없어 B이 2012년 6월과 7월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3).

이처럼 원고는 2013. 6. 27. 무렵에는 S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고, S이 운영한 B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S의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S와 B의 피해자들이 대단히 많고 피해 규모가 크고, S이 징역 5년 형의 중형을 선고 받은 내용까지 알고 있었으며, B의 주요 적극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마친 상태로서4), 원고는 앞서 본 소장에서 적은 것과 같이 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비하여 현저히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T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B의 나머지 재산내역을 들은 적이 없고, 2015년 B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아 B으로 그 명의를 회복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 등기 무렵 B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T로부터 B의 재산내역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S이 2012. 7. 구속된 이후, 원고가 B을 찾아가 T와 만났고, 그 후 2012. 8. 21. B, S 등으로부터 10억 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하는 인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T가 B과 S 등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으며, 원고가 2012. 8. 31. B 등에 해당 인증서를 주요 증거로 하여 약정금 10억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갑 제3호증), 같은 날 B의 주요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S 구속 이후 원고가 B의 주요 재산에 대한 파악을 단기간에 마치고 가압류 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경과, 원고가 가압류 신청을 한 부동산은 B의 집행 가치가 있는 주요 재산이었던 점, 원고가 이러한 조치 등을 기반으로 피해액 중 약 3억 6천만원 이상을 배당 등으로 지급받았던 반면 대부분 피고들은 피해액의 일부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고 피해 시기도 S 구속에 근접하였던5) 원고가 그 무렵 T 등으로부터 B의 재산내역을 대부분 파악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B의 재산내역을 파악한 경위 등도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2012. 7. 이후 이 사건 가압류 등기 무렵까지 원고는 T 등 B 직원들로부터 B의 재산내역을 대부분 파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가 2015년 이후 추가로 찾았다는 B의 재산 관련 주장을 본다. 원고가 2015년 무렵 JN 등을 상대로 전남 고흥군 JO 잡종지 450㎡, 전남 고흥군 JP 잡종지 2311㎡, 전남 고흥군 JQ 잡종지 1902㎡에 관하여 B이 JN 등에게 2008년 무렵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839 사건, 갑 제27호증), 승소한 사실이 인정된다6).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들은 B의 태양광

시설을 위한 부지로 그 위치, 규모에 비추어 재산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소송에서 주장한 명의신탁시기 또한 S이 구속되기 수년 전인 2008년 무렵이었으며, 해당 부동산들은 이 사건 가압류 등기 무렵 B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U의 2013. 10. 3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부분, 피고 V, W, X에 대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제1심판결 제5항 관련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제3항에서 보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과 피고 U의 2013. 10. 3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부분, 피고 V, W, X의 2014. 9. 24.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2013. 10. 31. 이후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 사건 후행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은 B의 동일한 사해의 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후행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후행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본다.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이 사건 후행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상대방은 피고 U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상대방이 아닐 뿐 아니라, B의 피해자들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계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등기를 마친 2012. 9. 17. 이전인 2012년 6월에서 7월 무렵까지⁷⁾ 체결되어 해당 등기가 2012년 7월에서 8월 무렵까지 마쳐진 데 비하여, 이 사건 후행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모두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이후에 마쳐진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3. 10. 31. 이후에 체결되어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이 사건 후행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E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E를 제외한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I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이형근, 판사 김윤정

별지

피 고 명 단

1. Y
2. Z
3. AA
4. AB
5. AC
6. AE
7. AF
8. AG
9. AH
10. AI
11. AJ
12. AK
13. AL
14. AM
15. AN
16. AO
17. AP
18. AQ

19. AR

20. AS

21. AT

22. AU

23. AV

24. AW

25. AX

26. AY

27. AZ

28. BB

29. BC

30. BD

31. BE

32. BF

33. BG

34. BH

35. BI

36. BJ

37. BK

38. BL

39. BM

40. BN

41. BO

42. BP

43. BQ

44. BR

45. BS

46. BT

47. BU

48. BV

49. BW

50. BX

51. BY

52. BZ

53. CA

54. CB

55. CC

56. CD

57. CE

58. CF

59. CG

60. CH

61. U

62. CI

63. CJ

64. CK

65. CL

66. CN

67. CO

68. CQ

69. CR

70. CS

71. CU

72. CV

73. CW

74. CX

75. CY

76. DA

77. DB

78. DD

79. DE

80. DF

81. DG

82. DH

83. DI

84. DJ

85. DK

86. DL

87. DM

88. DN

89. DO

90. DP

91. DQ

92. DR

93. DT

94. DU

95. DV

96. DZ

97. EA

98. EB

99. EC

100. H

101. EE

102. EF

103. EG

104. EH

105. EI

106. EJ

107. EK

108. EM

109. EP

110. EQ

111. ER

112. ES

113. ET

114. EV

115. EW

116. EX

117. EY

118. EZ

119. FC

120. FE

121. FF

122. JR(개명 전: FG)

123. FH

124. FJ

125. FL

126. FN

127. FO

128. FP

129. FQ

130. FR

131. FS

132. FT

133. FU

134. FV

135. FW

136. FX

137. FY

138. GA

139. GB

140. GC

141. GD

142. GE

143. GF

144. GG

145. GL

146. GN

147. GP

148. GR

149. GT

150. GU

151. GX

152. GY

153. HA

154. HB

155. HC

156. HE

157. HF

158. HH

159. HI

160. HK

161. HM

162. HN

163. HO

164. HP

165. HS

166. HX

167. HY

168. HZ

169. IA

170. IC

171. IE

172. IF

173. IG

174. IJ

175. IK

176. IL

177. IM

178. IN

179. IO

180. IP

181. IQ

182. IR

183. IT

184. IU

185. IV

186. IZ

187. JA

188. JB

189. JC

190. V

191. W

192. X

193. 망 C의 소송수계인 H

194. 망 L의 소송수계인(선정당사자) I

195. 망 E의 소송수계인 O

끝.

별지

선 정 자 명 단

망 L의 소송수계인

1. I

2. K

3. J

끝.

1) 이 항에서는 피고(선정당사자) I 을 포함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

2) B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원고의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3) 해당 소장의 내용은 1), 2)항에서 본 사실과 대부분 부합한다.

4) 이 당시에는 B의 10, 1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도 마친 상태였다.

5) 올라 제2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피해 규모가 크고 투자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 원고와 B 측에서 우선변제 등에 관한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JN 등의 자백간주로 승소하였다.

7)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S의 구속 무렵 B T 등의 권유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서 계약의 동기 또는 기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후행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시간적 경과 등으로 볼때, 같은 기회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